

의안번호	2208779
의 퇴 인	박주민의원
회 답 일	2025.4.9.
추 계 번호	25D1417

생명안전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안전수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억 4,600만원, 2031년 4,500만원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13억 6,700만원(연평균 2억 7,3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안 제9조)	45	45	45	45	45	225	45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안 제10조)	-	241	-	-	-	241	48
안전수준 관련 실태조사 (안 제14조)	901	-	-	-	-	901	180
합계	946	286	45	45	45	1,367	273

주: 1.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안 제9조)와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안 제10조)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안전수준 관련 실태조사(안 제14조)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함
2.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생명안전정책위원회)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2	안 제10조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의무규정
3	안 제14조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국가등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제15조 (안전영향 분석·평가)	국가등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8조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	의무규정
6	안 제19조 (기억과 추모)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규정
7	제20조 (공동체 회복)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심리적 안정 등의 회복·재난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 (생명안전정책위원회)	○	—
2	안 제10조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
3	안 제14조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	—
4	제15조 (안전영향 분석·평가)	X	안전영향 분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계획 및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분석 건수, 1건당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5	안 제18조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X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한 안전사고 기준과 범위, 조사기간, 인력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6	안 제19조 (기억과 추모)	X	추모공원 등 기억과 추모를 위한 사업의 규모, 평균 사업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7	제20조 (공동체 회복)	X	공동체 회복 사업의 규모, 평균 사업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생명안전정책위원회,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의 경우, 제정안에서 사무를 지원할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안 제12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조직에 대한 추계는 제외하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한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참석수당, 개최횟수를 곱하여 산출
 - 제정안은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최대 인원의 50%인 15명을 민간위원으로 가정
 - 참석수당은 2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며, 개최횟수는 연간 12회로 가정
- 추계결과,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4,500만원(= 15명×25만원×12회)으로 추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5.1%	3.6%	2.3%	1.9%	2.0%	2.0%	2.0%

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안전수준 실태조사 후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의 정책연구비용을 활용하여 산출
 - 제정안의 시행 예상년도인 2027년에 안 제14조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8년에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경우, 2021년에 2억원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되었고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억 4,100만원으로 추정

다. 안전수준 관련 실태조사(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5년마다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한 실태조사의 비용을 활용하여 산출
 - 제정안의 시행 예상년도인 2027년에 17개 시·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1건당 비용은 2025년 기준 5,000만원
 - 유사사례는 국토교통부가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가 있고,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1개소당 5,000만원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17개 시·도의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7년 9억 1,000만원(=17개×5,300만원)으로 추정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안전수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억 4,600만원, 2031년 4,500만원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13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구성	45	45	45	45	45	225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	241	—	—	—	241
안전수준 관련 실태조사	901	—	—	—	—	901
합계	946	286	45	45	45	1,3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이면도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